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지권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24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정지권 의원(1명)

찬 성 자 : 김상훈, 김제리, 송도호, 이광호,
이은주, 성중기, 이현찬, 장상기,
최웅식, 이동현 의원(10명)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에 의해 중요 사항을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나 보고 사항에 대한 통일된 사항이 불비하여 매번 요구자료 등에 의해 중복적으로 제출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에 효율화를 위하여 의회 보고사항을 일괄 정리하여 제시 하였음.

나. 임원추천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상임·비상임 이사를 선발하는 위원회로 상임·비상임 이사는 교통공사의 주요한 정책 등을 총괄 지휘하고 결심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그 책임은 교통공사 사장에 준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제정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변경시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에 사전 보고 하는게 타당할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회에 대한 보고 사항 명시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앞에 “제3장 사업”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5장 기차”를 삭제한다.

제31조 앞에 “제6장 감독”을 삭제한다.

제33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32조 및 제33조로 하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며,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21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21조의2를 제22조의2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회에 대한 보고) ①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서(사업설명서) 및 결산서
2. 도시철도세부계획
3. 부대사업계획 및 결과
4. 안전운전계획
5. 전동차 보전계획
6. 철도안전 시행계획

7. 국비지원 사업

8.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

9. 철도사고(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

10. 전동차 운행중 고장으로 인한 회송 사고(분기별)

제7조 앞에 “제2장 임원 및 직원”을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제2장 임원 및 직원”을 삽입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앞에 “제3장 사업”을 삽입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재무회계”를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재무회계”를 삽입한다.

제29조 앞에 “제5장 기채”를 삽입한다.

제32조 앞에 “제6장 감독”을 삽입한다.

제34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u><신 설></u></p> <p><u>제9조 ~ 제18조</u>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제3장 사업</u></p> <p style="padding-left: 80px;"><u><신 설></u></p> <p><u>제19조 ~ 제21조의2</u>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제4장 재무회계</u></p> <p style="padding-left: 80px;"><u><신 설></u></p> <p><u>제22조 ~ 제27조</u>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제5장 기채</u></p> <p style="padding-left: 80px;"><u><신 설></u></p> <p><u>제28조 ~ 제30조</u>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제6장 감독</u></p> <p style="padding-left: 80px;"><u><신 설></u></p> <p><u>제31조 · 제32조</u>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제7장 보칙</u></p>	<p><u>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제10조 ~ 제19조</u> (현행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u><삭 제></u></p> <p style="padding-left: 40px;"><u>제3장 사업</u></p> <p><u>제20조 ~ 제22조의2</u>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의2까지와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u><삭 제></u></p> <p style="padding-left: 40px;"><u>제4장 재무회계</u></p> <p><u>제23조 ~ 제28조</u> (현행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u><삭 제></u></p> <p style="padding-left: 40px;"><u>제5장 기채</u></p> <p><u>제29조 ~ 제31조</u>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u><삭 제></u></p> <p style="padding-left: 40px;"><u>제6장 감독</u></p> <p><u>제32조 · 제33조</u> (현행 제31조 및 제32조와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u><삭 제></u></p>
<p style="padding-left: 40px;"><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40px;"><u>제7장 보칙</u></p>

제34조 ~ 제36조 (생략)

제35조 ~ 제37조 (현행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와 같음)